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27
----------	-----

2023. 10. 18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정일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0월 17일

-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정일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,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

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·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안 제8조)
- 관련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(IQ)가 71~84의 범주에 속하며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 지능인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가 없으며 지능지수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의 약 13.6%인 약 699만 명(2023년 5월 기준)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임¹⁾.

1)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(이슈와 논점 제2109호, 국회입법조사처, 2023.6.29.)

- 경계선지능인은 어린 시절 조기 발견하여 특성에 맞는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지면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‘장애’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고 있는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.
-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, 조기 진단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,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미가 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는 총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 -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는 목적, 정의,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5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안 제6조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,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,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조는 ‘경계선지능인’ 과 ‘경계선지능인 지원’ 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.
 -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상위법령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고 학계 및 연구에서도 ‘경계선 지적 기능성 학습자’, ‘경계선급 지능 아동’, ‘느린학습자’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음.

- 그러나 공통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지적장애인 보다는 높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있는 바,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 - 다만, 경계선지능인의 범위를 특정하는 합의된 기준 또한 부재한 상황 이므로 향후 안 제6조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 - ‘경계선지능인 지원’ 과 관련하여 진단, 치료, 돌봄, 교육 및 취업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지원범위가 광범위 하기는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진단부터 자립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지며, 소관부서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조례에 규정된 지원을 잘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- 안 제5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.
-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짐.
- 안 제6조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.

- 현재 경계선지능인을 지능지수를 토대로 추정할 뿐 명확한 통계가 없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.
 - 실태조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필수절차로 경계선지능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들의 욕구와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여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·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7조에 규정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진단, 치료, 돌봄, 교육 및 취업 지원,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은 행정영역에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.
 - 안 제8조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,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접운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9조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조의 ‘경계선지능인 지원’에 규정된 진단, 치료, 돌봄, 교육 및 취업 등은 행정영역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료, 교육, 직업훈련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·협력이 필요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인구 약 13.6%를 차지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제도적 지원 밖에서 방치될 경우 개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 가중, 각종 범죄 노출과 같은 사회적 문제나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.
- 본 조례 제정은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경계선지능인”이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“경계선지능인 지원”이란 진단, 치료, 돌봄, 교육 및 취업 등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
2.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
3.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보급
4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5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자원 마련 및 조달 방법
6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, 치료, 돌봄, 교육 및 취업 지원

2.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보급

3.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

4.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·연구

5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

6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
7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운영의 위탁)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, 평생교육기관, 직업훈련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.

가. 지적장애인: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

나. 자폐성장래인: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·신체표현·자기조절·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
다.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□ 장애인복지법

제2조(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) 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9. 6. 4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3., 2010. 3. 19., 2019. 6. 4.>

[제목개정 2019. 6. 4.]

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2. 9. 6.>

장애인의 장애 정도(제2조 관련)

6. 지적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)

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·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도내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
-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소요경비
-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소요경비

3. 관련조문

- 안 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)
- 안 제6조(실태조사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4년~2028년 (5년간)
- 예산 확보 상황 및 구체적 시행 가능한 사업에 한해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 : 100,000천원

-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
 - 50,000천원 × 1식 = 50,000천원
-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
 - 50,000천원 × 1식 = 5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출		100,000					100,000
	충청북도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	50,000					50,000
	충청북도 경계선 지능인 기본계획 수립	50,000					50,000
재원 조달		100,000					1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00,000					100,000
	지방세	100,000					10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·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